마음이 모여 마을이 됩니다!

성북구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장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공람·공고

---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(2006.10.19.)호 재정비촉진지구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11(2008.04.03.)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14호(2011.05.06.) 촉진계획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09호(2013.01.17.) 사업시행인가, 서울특별시고시제2014-406호(2014.11.27.),서울특별시고시제2015-132호(2015.05.14.),서울특별시고시제2015-320호(2015.10.15.)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장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입니다.

2.『장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』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신청서가 제출되어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하고자 합니다.

가. 사업개요

1) 사업명칭 : 장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2) 위 치 : 성북구 장위동 189-3번지 일대 (시행면적 : 86,921.7㎡)

3) 시 행 자 : 장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

4)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 부터 60개월

5) 건축계획 : 지하2층/지상29층, 19개동, 공동주택(아파트) 1,71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

나. 주민공람·공고 개요

1) 공람기간 : 2015.10.29. ~ 2015.11.12.(15일간)

2) 공람장소

가) 성북구청 주거정비과(☎2241-2833)

나) 장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☎909-3695)

3) 공람내용 : 사업시행변경인가 관계도서

4) 관계도서 : 공람장소에 비치

5) 공고방법 : 구보 게재 및 조합사무실 게시판 게시

붙임 : 1. 공고문 1부.
2. 공람의견서 1부.
3. 공람도서 1부(별도). 끝.

주무관	권익생	재정비사업1담당	강우균	주거정비과장	정택근	도시환경국장	전결 10/20 代이승복

협조자 주무관 김하연

시행 주거정비과-12889 ( ) 접수 ( )

우 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(삼선동5가) / http://www.seongbuk.go.kr
전화 /전송 / / 대시민공개